무배당 프로미라이프

# 다이렉트 펫블리 반려묘보험

# 특별약관

제1장 반려동물관련

## **1** | 특약 이름[**반 려동물 의료비**II]

## 1. (목적)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상해 또는 질병(이하 '사고'라 합니다)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 2. (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계약관계 관련 용어

용어	정의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피보험자	반려동물의 소유와 관련하여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용어	정의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반려동물이 입은 상해를 말하며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병	상해를 제외한 상병을 모두 포함합니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부가설명	음식물

반려동물이 일상 생활 중 보호자 또는 생산자의 의도와 상관 없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이 원료와 가공품 및 부산물(뼈, 과일 씨 등 폐기 대상물질)을 말하며, 사람 및 다른 동물의 식이로 활용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음식물의 상태(부패, 감염 여부 등)와 상관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관리하는 묘(猫)를 말합니다.

③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질병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상해의 경우 보험계약일)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이 계약의 갱신일

####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3.(보험금의 지급사유) I의 의료비보험금은 3.(보험금의 지급사유) II에서 정한 사고로 발생한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아래에서 정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연간 총 보상한도액 700만원 의료비의 경우】

수술 여부	수술 횟수	지급	
구절 서구		보상 한도	자기부담금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1일당 10만원	
수술을 한 날의	연 2회 초과 시	120 1000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당 자기부담금
경우	연 2회 이하 시	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150만원	

#### 3. (보험금의 지급사유)

- □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상해 또는 질병(이하 "사고"라 합니다)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일당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 치료에 사용된 비용(각종 할인 및 감면, 사후환급금액 등을 제외한 실수납액을 의미합니다. 이하「의료비」라 합니다)을 이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의료비보험금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② 위 ①의 반려동물이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며, 사육

[연간 총 보상한도액 1.000만원 의료비의 경우]

수술 여부	수술 횟수	지급	
구절 역구	구절 첫구	보상 한도	자기부담금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	1일당 15만원 / 30만원 중 보험증권에	
수술을 한 날의	연 2회 초과 시	기재된 일당 보상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당 자기부담금
경우	연 2회 이하 시	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200만원	

## 〈지급보험금의 계산 〉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 적용 자기부담금) x 보상비율]과 일당 보상한도 중 작은 금액

#### 〈예시안내〉

- · 일 보상한도액: 15만원, 보상비율 80%, 자기부담금 3만원 기준 (예시1)
- 피보험자가 부담한 당일 의료비 23만원, 수술하지 않은 경우
- 보험금 지급금액
- = [(23만원 3만원) × 80%]과 15만원 중 적은 금액
- = 15만원

#### (예시2)

- 피보험자가 부담한 당일 의료비 103만원, 수술한 경우
- 보험금 지급금액
- = [(103만원 3만원) × 80%]과 200만원 중 적은 금액
- = 80만원
- ② 반려동물이 3.(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이내의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이내의 치료인 경우에 한합니다.
- ③ 위 3.(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

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 7.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②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③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④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⑤ 위 ④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⑥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 ⑦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 단, 이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⑧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③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⑩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f)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 태
  - ⑫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 ② 회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아래의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①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험개시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 는 당해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②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처치를 하지 않아

#### 발생한 아래의 질병

고양이범백혈구감소증, 고양이칼리시바이러스감염증, 고양이바이러스성비기관지염,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감염증

- ③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④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⑤ 대상 반려동물의 정상적인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⑥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⑦ 미용으로 인한 비용
- ⑧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⑨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유치잔존,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탈 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
- ⑩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방 약, 의약부외품 등)
- ① 한의학(단, 침구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 의료, 재활치료
- ②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상품 값 포함) 및 이어클리너, 벼룩, 젝켄, 모공충의 제 거비용
- ® 펫호텔 비용 또는 위탁료,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및 이와 동 종의 비용
- ※ 왕진료,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⑤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⑥ 마이크로칩의 삽입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우송비 포함)
- ⑪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 ③ 위 ②에서 정한 조치에 다른 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②에서 정한 조치 (마취 비용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가입동물인 고양이에 대하여 아래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치석제거 및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치료 비용
  - ② 구강내 질환

- 을 이 약관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위 ①의 반려동물 의료비॥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보험금이란 [제1장 반려동물관련] 『1.반려동물 의료비॥(고양이)(실손)(갱신형) 특별약관』, 『3.반려동물 의료비॥ 치과및구강질환확장보장(고양이)(실손)(갱신형)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보험금 합계를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자기부담금이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 의료비॥ 자기부담금을 말합니다.
- ④ 위 ①의 반려동물이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며, 사육· 관리하는 묘(猫)를 말합니다.
- 5 위 1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질병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상해의 경우 보험계약일)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이 계약의 갱신일

####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 1.(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보상은 연간 1회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보상 금액은 1. □에서 정한 사고로 발생한 의료비에서 반려동물 의료비Ⅱ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보험금과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하도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지급보험금(보상금액)의 계산〉

[(피보험자가 부담한 당일 의료비 - 반려동물 의료비Ⅱ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보험금 - 자기부담금) × 보상비율]과 보험증권에서 정한 보상한도액 중 적은 금액

- 2 | 특약 이름[반 려동물 의료비॥(확장보장)(MRI,CT,내 시경)(연간1회한)]
-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상해 또는 질병(이하 "사고"라 합니다)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수의사가 치료 중 「영상검사(MRI,CT,내시경)」를 시행한 경우, 당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 치료에 사용된 비용(각종 할인 및 감면, 사후환급금액 등을 제외한 실수납액을 의미합니다. 이하「의료비」라 합니다.)에서 반려동물 의료비Ⅱ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보험금과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 (예시안내)

• 보상한도액 50만원, 보상비율 80%, 자기부담금 3만원 기준

#### (예시1)

- 피보험자가 영상검사(MRI) 시행 당일 부담한 의료비 : 318만원
- 반려동물 의료비॥에서 지급한 보험금 : 15만원
- 보험금 지급금액 = [(318만원 - 15만원 - 3만원) × 80%]과 50만원 중 적은 금액 = 50만원

#### (예시2)

- 피보험자가 영상검사(MRI) 시행 당일 부담한 의료비 : 68만원
- 반려동물 의료비॥에서 지급한 보험금 : 15만원
- 보험금 지급금액 = [(68만원 - 15만원 - 3만원) × 80%]과 50만원 중 적은 금액 = 40만원
- ③ 반려동물이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이내의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이내의 치료인 경우에 한합니다.
- ④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 3. ("영상검사(MRI,CT,내시경)"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영상검사(MRI,CT,내시경)"라 함은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 흥촬영(CT) 및 내시경 검사를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자기공명영상(MRI)"이라 함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수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수의사의 관리 하에 자기공 명영상(MRI)을 사용하는 촬영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컴퓨터단층촬영(CT)"이라 함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수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수의사의 관리 하에 "컴퓨터단층촬영(CT)"을 사용하는 촬영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③ 위 ①의 "내시경 검사"라 함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수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수의사의 관리 하에 내시경을 이용 하여 비침습적으로 시행하는 의료행위를 말하며, '식도', '위' 또는 '장'에 시행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자기공명영상(MRI)

강한 자기장 내에서 인체에 고주파를 전사해서 반향 되는 전자기파를 측정하 는 영상진단법

#### 컴퓨터단층촬영(CT)

x선을 투과시켜 그 흡수차이를 컴퓨터로 재구성하여 신체의 단면영상을 얻거나 3차원적인 입체영상을 얻는 영상진단법

#### 내시경

내장장기 또는 체강(體腔) 내부를 직접 볼 수 있게 만든 의료기구

##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②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③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④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⑤ 위 ④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⑥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 ⑦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 단, 이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⑧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 리에 대한 태만
  - ⑨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 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⑩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 태
- ⑫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 ② 회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아래의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①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험개시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 는 당해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②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처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아래의 질병

고양이범백혈구감소증, 고양이칼리시바이러스감염증, 고양이바이러스성비기관지염,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감염증

- ③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④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⑤ 대상 반려동물의 정상적인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⑥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⑦ 미용으로 인한 비용
- ⑧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⑨ 손톱걸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유치잔존,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탈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
- ⑩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방 약, 의약부외품 등)
- (1) 한의학(단, 침구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 의료, 재활치료
- ②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상품 값 포함) 및 이어클리너, 벼룩, 젝켄, 모공충의 제 거비용
- ③ 펫호텔 비용 또는 위탁료,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④ 왕진료,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⑤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⑩ 마이크로칩의 삽입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우송비 포함)
- ⑰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 3 | 특약 이름 [반 려동물 의료비 II 치과및구 강질환 확장보장]

##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1.반려동물 의료비Ⅱ(고양이)(실손)(갱신형) 특별약관』7.(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④의 ①, ②에도 불구하고, 치석제거 및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치료비용, 구강내 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반려동물 의료비를 『1.반려동물 의료비

॥(고양이)(실손)(갱신형) 특별약관』 3.(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치과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① 구강내 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반려동물 의료 비에서 제외합니다

## 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장 반려동물관련] 1.반려동물 의료비॥(고양이)(실손)(갱신형) 특별약관』을 따르며, 이 특별약관 및 『[제1장 반려동물관련] 1.반려동물 의료비॥(고양이)(실손)(갱신형)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24.(계약의 소멸) 및 12.(보험수익자의 지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4** | 특약 이름[**반려동물 장례지원비**]

####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아래의 금액을 반려동물 장례지원비로보상하여 드립니다.

장례지원비	지급금액	
	경과기간	지급금액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상	가입금액의 100%
	 가입금	남백의 100%

- ② 위 ①의 반려동물이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며, 사육· 관리하는 묘(猫)를 말합니다.
- ③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이 계약의 갱신일

##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사망은 동물병원에서 적법하게 시행된 안락사를 포함합니다. 단. 이 경우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②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손해. 단, 이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③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④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손해,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손해
  - ⑤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⑥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⑦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⑧ 위 ⑦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 태
  - ⑩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①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하기를 받은 동물장묘업체(이하 '장묘업체'라 합니다.)에서 반려동물 장례 중 발생한 장례비용(각종 할인 및 감면, 사후환급금액 등을 제외한 실수납액을 의미합니다)에 대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위 ①의 장례비용은 장묘업체에서 정의하는 기준장례비용에 무게에 따른 추가 장례비용(화장비용 등)을 더한 금액에 70%를 곱한 비용을 말합니다.
- ③ 위 ②의 기준장례비용이란 반려동물 장례 중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기준장례용품(기본유골함, 보자기, 기본 국화, 기본 나무관, 기본 수의에 한합니다.)에 대한 장례비용(최소 무게 기준)을 말하며 최대 50만원한도로합니다. 단, 기능성유골함, 고급수의(보), 추모보석 제작, 고급 케이스, 고급 특수관, 꽃다발, 리무진이용, 산골, 납골당 등 기준장례용품 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항목들은 기준장례비용에서 제외합니다.
- ④ 위 ①의 반려동물이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며, 사육관리하는 묘(貓)를 말합니다.
- 5 위 1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이 계약의 갱신일



#### 동물보호법 제69조(영업의 허가)

인용 문구 이 반려동물(이하 이 장에서 "동물"이라 한다. 다만, 동물장묘업 및 제71조 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로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동물생산업 2. 동물수입업 3. 동물판매업 4. 동물장묘업

## 5 | 특약 이름[**반 려동물 장례지원비**II]

## 1. (보험금의 지급사유)



염습

## 용어 품이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잔변이나 잔뇨 및 혈흔을 깨끗하게 닦는 행위 **추모예식** 

반려동물의 안녕을 빌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예식 화장

고열로 사체를 태워 사체의 유기물은 제거하고 유골만 남기는 과정

#### 〈예시안내〉

- · 보험가입금액 40만원, 반려묘 10KG 기준
- 기준장례비용 : 5KG 기준 60만원
- 무게에 따른 추가 장례비용 : 5KG 초과 시 1KG 당 2만원
- 보험금 지급금액
- = [(60만원과 50만원 중 적은 금액) + (10KG-5KG) X 2만원] X 70% 과 40만원 중 적은 금액]
- = 40만원

##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사망은 동물병원에서 적법하게 시행된 안락사를 포함합니다. 단, 이 경우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②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손해. 단, 이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③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④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손해,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손해
  - ⑤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⑥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 태

- ⑦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⑧ 위 ⑦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 태
- ⑩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② 회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아래의 장례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① 메모리얼 스톤, 루쎄떼 등 추모보석 및 제작 비용
  - ② 고급특수관, 고급 케이스, 기능성 유골함, 고급 수의(보) 등 기본항목 외 추가 적으로 발생하는 용품 비용
  - ③ 리무진 이용, 산골, 납골당, 반려동물 픽업 등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서비스 비용